연구개발비 주요 변경 사항

연구개발비 주요 변경사항(2021)

1. 다년차 정산, 연도별 사용내역 보고 및 이월

- 사용내역 보고 및 이월: 방법 및 세부 절차 추후 공지

2.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『기관부담연구개발비』필수 부담

3. 현물부담 기준

- 연구시설·장비: 5년이내 구입한 것, 내용연수가 만료되지 않을 것, 구입가의 20% 내에서 계상
  * 이 경우 해당 시설·장비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된 경우 ZEUS에 등록
- 연구활동비 중 기술도입비: 2년이내 도입한 것, 도입비용의 50% 내에서 계상
- 연구재료비: 구입비

4. 연구활동비 중 외부 전문기술활용비는 직접비의 40%이내 계상

- 세부항목: 기술도입비, 전문가활용비,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

5. 일용임금(종전 인건비 항목)이 연구활동비의 항목으로 변경

6. 영리기관의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인건비 관련

- 계상 상한선 50%, 원래 계획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승인 사항
- 신규채용 인건비는 기존인력의 인건비와 구분 관리(연구개발비 지침 별지 4호 서식)

7. 연구개발비 비례 청년 의무 채용 등

- 신규채용(의무, 추가)의 경우 채용 의무, 고용유지기간 위반시 해당 인력 인건비 전액 회수

> **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_5장_1절_29조(공동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예고·공모 등)_9항**
>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관이 기업인 경우, 총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당 1명 이상의 만18세 이상 34세이하(채용시점기준, 이하 "청년인력"이라 한다.)을 신규채용 하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해당 과제 공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.

8. 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지원비 사용 제한

- 소모성 운영비용 사용 불가
- 사무용기기·소프트웨어, 연구실환경유지비는 원래 계획에 있는 경우 사용 가능(세부 품목, 운영지침 별지 서식 제출)

9. 감염병 지원대책 2021년까지 적용

- 중소기업은 (현재) 25% →(개정) 20% 수준으로 민간부담금을 완화하고, 현금 부담비중은 중소, 중견기업 모두 10% 수준으로 완화
- 중소기업의 경우 출연금의 50%까지 인건비 현금 사용 인정